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5
----------	-----

제출일자 : 2006. 6.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2006. 6. 30일자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 만료 및 2006. 7. 1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여유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안 제3조)
-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둠(안 제6조제1항)
-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안 제6조제2항)
 - 사회산업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분장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중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사항”, “청소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무로 분장함

나. 여유키구 명칭변경 :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추진단(안 제3조의2)

다. 도시국에 두는 과 조정 : 5개과 → 5개과 1단

- 교통행정과를 사회산업국에서 이관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 순으로 함(안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나. 예산조치 : 동 상담실설치 예산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6. 5. 18 ~ 6. 2(15일간) ▷ 제출의견 없음

마. 기 타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 개편 지침(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 1428, 2006. 4.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소장, 실·과장의 직급 등)”을“(국·실·과·단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소장·실장·과장”을“실장·과장·단장”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실·국·소의 설치)”를“(실·국의 설치)”로 하고, 동조중“사회산업국, 사회복지사무소”를“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3조의2중“도시개발과를”을“도시개발추진단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관광 및 청소년보호업무”를“관광업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서비스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 사항
2.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사항
6.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7.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
8.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
10.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12.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식품·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관리
14.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5.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1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 한다.

제7조제1항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를” 을 “교통행정과,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을” 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보상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기전설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인적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5.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10.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관리
1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3.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15.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및 연안관리업무 총괄
16. 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사무소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복지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 “사회복지사무소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복지사업과장” 을 “주민서비스과장” 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자활 의료지원팀장” 을 “자활고용담당” 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복지사업과장” 을 “주민서비스과장” 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2호 “노인복지팀장” 을 “노인복지담당” 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복지사업과장” 을 “주민서비스과장” 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2호중 “여성아동팀장” 을 “여성보육담당” 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 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호중 “도시개발과장” 을 각각 “도시개발추진단장” 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행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동조제5호 및 동조제6호중 “도시개발과장” 을 각각 “도시개발추진단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국·소장, 실·과장의 직급 등) ①구본청국장·<u>소장·실장·과장</u>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생략)</p>	<p>제2조 (국·실·과·단장의 직급 등) ①----- 실장·과장·단장 -- ----- ----- ②(현행과 같음)</p>
<p>제3조 (실·국·소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 감사실, 총무국, <u>사회산업국</u>, 사회 복지사무소, 도시국을 둔다.</p>	<p>제3조 (실·국의 설치) ----- ----- ----- 주민생활 지원국 -----</p>
<p>제3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여유 기구로 도시국에 <u>도시개발과</u>를 둔다.</p>	<p>제3조의2 (여유기구의 설치) ----- ----- 도시개발추진단을 ----</p>
<p>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①~②(생략)</p> <p>1. ~ 4. (생략) 5. <u>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u> 6. ~ 12. (생략) 13. <u>공보행정, 관광 및 청소년보호업무</u>에 관한 사항 14. ~ 16. (생략)</p>	<p>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①~②(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 12. (현행과 같음) 13. ----- 관광업무 -- ----- 14. ~ 16. (현행과 같음)</p>
<p>제6조 (사회산업국에두는과) ①<u>사회 산업국</u>에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u>교통행정과</u>를 둔다.</p>	<p>제6조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u>주민생활지원국</u>에 주민생활지원과, <u>주민서비스과</u>,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둔다.</p>

현행	개정안
<p>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2.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 3.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 5.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7.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식품·공중위생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9.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0.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사항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교통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13. 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p>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 업무에 관한 사항 2.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청소년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사항 4.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6.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7.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 8.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 육성 및 공원개발관리 10.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 12. 수질행정, 대기보존 및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3. 식품·공중위생 업무의 종합 계획수립 및 조정·관리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의2 (사회복지사무소에 두는 과)</u></p> <p>①<u>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를 둔다.</u></p> <p>②<u>사회복지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공공부조업무에 관한 사항</u> <u>2. 노인·장애인·아동·모부자·여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u> <u>3.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 내실화에 관한 사항</u> <u>4. 민간자원의 개발·연계 등 지역 사회복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p>14. <u>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p> <p>15. <u>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u></p> <p>16. <u>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u>제7조 (도시국에 두는 과)</u> ①도시국에 건설과, 재난안전과, <u>도시개발과</u>, 건축과, 지적과를 둔다.</p> <p>②(생 략)</p>	<p><u>제7조 (도시국에 두는 과)</u> ①----- ----- <u>교통행정과</u>, <u>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추진단</u>을 -----</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상에 관한 사항	2.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상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기전설비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전설비 유지관리	4. 자연·인적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5. 자연·인적재난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 총괄	5.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6. 민방위업무의 총괄 및 비상대책에 대책에 관한 사항	6.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7. 주차행정·교통지도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8.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9.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10. 연안관리업무 총괄	10.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관리
11. 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	1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2.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12.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종합 조정	13. 지역개발행정 종합계획 수립 시행
14.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관리	14.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15.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15.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및 연안 관리업무 총괄
1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및 지하수 행정에 관한 사항